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정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국민제안정책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을 “민원정보분석과·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국민제안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민제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우수제안 및 정책화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정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통계관리

6. 그 밖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481”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3”을 “475”로 하며,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를 “155”로 하고,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4”를 “4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78”로 하며,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를 “155”로 하고,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사·방송통신주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7”로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5 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제안정책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제안정책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제안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⑧ (생략)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u>국가보훈처</u>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1. ----- <u>국</u> <u>가보훈부</u>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u>문화재청</u> · 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1. ----- ----- <u>국가유산청</u>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생 략)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 총괄과 · 경제제도개선과 · 사회 제도개선과 · 국민신문고과 · 민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신 설>

⑪ (현행과 같음)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원정보분석과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국민제안정책팀-----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민제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우수제안 및 정책화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정책화 지원에 관한 사항

	<u>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u>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통계관리</u> <u>6. 그 밖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u>
--	---

신 · 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481</u>		<u>483</u>	+2	
일	반	•	•	•	•		
직	계	•	•	•	•		
			<u>473</u>		<u>475</u>	+2	
		•	•	•	•		
		•	•	•	•		
검	찰	사무관					
•	행	정사무관					
•	사	회					
•	복	지사무관					
•	통	계사무관					
•	부	감					
•	사	관					
•	공	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					
•	해	양수산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식	품위생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임	업사무관					
•	전	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환	경사무관					
•	또	는					
기	록	연구관					
		•	•	•	•	+1	
		•	•	•	•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 사 · 마약주사주사 · 방송통신주 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 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 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 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6</u> · ·	<u>137</u> · ·	+1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484</u>		<u>486</u>	+2	
일	반	직	•	•	•		
계		•	•	•	•		
			<u>476</u>		<u>478</u>	+2	
		•	•	•	•		
		•	•	•	•		
검	찰	사					
무	관	•					
행	정	사					
무	관	•					
사	회						
복	지	사					
무	관	•					
통	계	사					
무	관	•					
부	감						
사	관	•					
공	업	사					
무	관	•					
농	업	사					
무	관	•					
해	양	수					
산	사	무					
관	•	보					
건	사	무					
관	•	식					
품	위	생					
사	무	관					
시	설	사					
무	관	•					
임	업	사					
무	관	•					
전	산	사					
무	관	•					
방							
송	통	신					
사	무	관					
환	경	사					
무	관	또					
는							
기	록	연					
구	관						
		•	•	•	•		
		•	•	•	•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 관세주사 · 농업주 사 · 마약주사주사 · 방송통신주 사 · 보건주사 · 보호주사 · 사회 복지주사 · 세무주사 · 시설주사 · 식품위생주사 · 임업주사 · 전 산주사 · 출입국관리주사 · 통계 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 ·	<u>136</u> · ·	<u>137</u> · ·	+1
---	-------------------------------------	-------------------------------------	-----------